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3차 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73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77호)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83호)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8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6
2. 개정안별 검토의견	9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2) 환경영향평가법	13
(3) 자연공원법	17
(4) 환경보건법	20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법률명	발의일	회부일	대표발의
1	220717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12.31	2025.1.2	진성준의원
2	2207177	환경영향평가법			
3	2207183	자연공원법			
4	2207185	환경보건법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 사업의 필요성, 댐 외의 대안 여부 및 해당 대안의 실행가능성, 댐 건설대상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 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수자원·하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됨.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 계획의 필요성·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댐 건설의 추진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됨. 그러므로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등).

3. 자연공원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4. 환경보건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환경성질환의 지정·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

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서는 각각 사전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공원위원회,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함)를 설치하고,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환경보건 증진 등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심의·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등의 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표] 개정대상 법률 및 위원회(협의회)

개정대상 법률명 (위원회/협의회)	목적	구성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전검토협의회)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10조제4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자원·하천·환경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시행령제1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8조제1항)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포함(제8조제2항)

개정대상 법률명 (위원회/협의회)	목적	구성
자연공원법 (공원위원회)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각급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제9조제2항)
환경보건법 [[지역]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 및 지역 환경보건 증 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제9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3항)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¹⁾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 대상 4건의 현행법은 위원회등의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은 위원회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²⁾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등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심의·검토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등의 위원이 금품의 수수(收受)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개정안별 검토의견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사전검토협의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안은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알선수뢰의 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4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은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검토협의회³⁾를 설치하고,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댐 이외의 대안 및

- 3) 법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그 실행가능성,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⁴⁾ 등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⁵⁾⁶⁾.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⁷⁾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시행령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5) **법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행령 제11조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서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이 금품의 수수(收受)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076호, 정부 제출)에 사전검토협회의 폐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⁹⁾되어 있어, 동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2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방법”으로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알선수뢰의 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 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현행	개정안
	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등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10)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¹¹⁾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협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¹²⁾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의의 민간위원이 금품의 수수(收受)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자연공원법」(공원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안은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알선수뢰의 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은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등 자연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공원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¹³⁾.

13)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현황]

구 분	국립공원위원회	도립/군립공원위원회
소 속	환경부	도·광역시 / 군·시·자치구
위원수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환경부차관	부지사 / 부군수
위 원	■ 당연직 정부위원(9명)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 당연직 민간위원(2명) * 공단 자원보전이사, 조계종 사회부장 ■ 위촉직 민간위원(13명) * 거주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 거주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자연공원 관계 전문가

※ 출처: 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¹⁴⁾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¹⁵⁾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의 수수(收受)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환경보건법」(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안은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알선수뢰의 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은 환경보건위원회¹⁶⁾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¹⁷⁾(이하 “위원회

16) 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및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환경성질환의 지정 및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 거시적인 정책 사항에 관한 심의뿐만 아니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위해성 물질 사용의 제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등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¹⁸⁾.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7) **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8) **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¹⁹⁾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²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가 국민의 환경보건 관련 권익과 직결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금품의 수수(收受)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²¹⁾.

문 의 처

02)6788-5547

21) 다만, 개정안의 신설된 제30조의2는 1개 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항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